

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1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1. 24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1. 24

2. 제안설명

- 가. 제안설명 : 주민자치과장 임 시 품
- 나. 제안이유
 -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.
- 다. 주요내용
 -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군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조항 삭제 (안 제4조)
 - 장학금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본인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토록 함 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지급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의견청취 부분 등을 삭제, 수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의견없음.
- 그러나 조례 형식상 개정안 제4조(선발)와 제7조(장학금의 지급) 조항간의 중복문구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.
- 개정안 제4조(선발) 제1항 “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 지급한다.” 를 “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.” 로 수정 검토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수정의결”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첨 부 :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제4조(선발) ①군수가 읍·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본인 또는 학부모를 통해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선발)①군수가 읍·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4조(선발)①군수가 읍·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